

대통령 윤석열 파면... 위대한 국민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를 시작하지 1060일만이다. 파면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 효력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38일 동안 속의를 거쳤다. 역대 최장 속의 기간이다. 현재는 “피청구인은 균형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아예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

현재,尹 탄핵심판 8인 전원일치 결정...헌정사 두번째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비상계엄’ 무모한 도박 실패...집권 1061일만에 퇴장

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박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선고를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현재의 선고가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비해 크게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이어져 진영 대결이 극심했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참예된 경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새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었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해제 선언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14일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의결서 현재 접수
16일	현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정형석 재판관 주심 지정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첫 출석 (이후 9차 재판 11차까지 출석)
15일	윤 대통령, 구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 윤 대통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장, 최종 의견 진술
3월 8일	윤 대통령 석방
4월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4일	현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윤 대통령, 직위 상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은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기대선 돌입... ‘6월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면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현재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재외투표를 위해서는 선거일 전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선거 50일 전 공고 한 대행, 8일 국무회의서 선거일 발표할 듯

야 한다. 대선은 통상 수요일에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변경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탄핵 인용 시 대선은 6월 3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 날이 선거일이 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에 따라 현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8일이나 늦어도 4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때라면 신고 기간이 90일이지만, 궐위로 인한 선거 시에는 최대 20일로 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 앞당겨 치러질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더 짧아져 재외국민 선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아울러 6월 3일 대선이 실시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재외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